

실내건축공사업

■ 업무내용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등록기준

1. 자본금

법인	개인
1.5억원 이상	1.5억원 이상

2. 기술능력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기술사	용접, 건축구조, 건축시공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용접, 건축, 건축도장, 건축목공, 건축일반시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건축제도,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기능사	피복아크용접, 특수용접, 가스틸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가스아크용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비계, 실내건축, 유리시공, 전산용융건축제도,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건축목공, 도배, 비계, 유리시공, 목재창호,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사람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제외한다.

3. 공제조합

2025.05.13 기준

업종	1좌당	자본금	CC등급 이상	C등급
실내건축공사업	950,392원	1.5억원	43좌 (40,866,856 원)	53좌 (50,370,776 원)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동일

4. 시설·장비

사무실

사무실은 『건축법』 등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하며, 건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시·도 안에 있어야 한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건물 등 상시적으로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등록 불가

신규등록 소요기간

평균 30~45일 이내 소요